

2024-2026년
ESG KOICA-청년중기봉사단
파견사업(Governance)
봉사단 모집 공고

2024년 05월



지구촌나눔운동
Global Civic Sharing

■ 모집개요

- ◆ 모집인원: 총 60명(국가별 15명)
- ◆ 활동국가: 캄보디아, 동티모르, 피지, 르완다
- ◆ 활동기간: 2024년 8월 중 ~ 2024년 12월 (총 5개월)
- ◆ 활동구분: 국내 활동(해외 활동 전, 후/ 총 1개월), 해외 활동(4개월)
- ◆ 교육일정: 7월 중 (단, 교육은 국내 활동에 포함되지 않음)
- ◆ 활동내용: 청년들과 함께하는 거버넌스 활동
 - 한국&현지 청년 팀 구성, 파견 현장 수요에 따른 교육 분야 개발 / 평화 인식 제고 관련 액션플랜 기획 및 실행
 - 국내외 활동 홍보 및 SNS 운영
 - 교육 및 홍보자료 제작 및 번역
 - 영상 제작 및 편집
- ◆ 모집 분야: 일반교육 (초등 영어, 수학), 보건, 컴퓨터, 청소년 개발, 국제개발, 사회복지, 체육, 음악, 미술, 현지어(캄보디아, 르완다, 피지, 동티모르), 평화 인식 제고
- ◆ 프로그램 구성
 - ① 캄보디아 (유초등교육 지원)
 - 유초등학교 기초 교육 운영 계획 수립
 - 영어, 수학, 음악, 미술 등의 기초학력 증진 활동
 - 유초등학교 학생, 교사 대상 세계시민교육
 - ② 동티모르 (초등교육 지원)
 - 수학, 컴퓨터, 스포츠 교육 운영 계획 수립
 - 초등학교 학생 대상 수학, 컴퓨터, 체육 등의 학력 증진 활동
 - ③ 피지 (교육지원)
 - 초중고학교 학생 대상 컴퓨터 교육과 예체능 활동 계획수립
 - 컴퓨터 교육과 예체능 교육 증진 활동
 - 초중고학교 학생 대상 세계시민교육
 - ④ 르완다 (유초등교육 & 평화지원)
 - 유초등학교 학생 대상 기초 교육 계획 수립 및 교육 증진 활동
 - 한국, 르완다 청년 간의 협업을 통한 평화 인식 제고(제노사이드 관련) 증진 활동
 - ⑤ 공통활동
 - 청년 거버넌스 컨퍼런스/워크숍 기획 및 운영
 - 유튜브 등 영상미디어 제작 및 홍보
 - SNS 연계를 통한 미디어 캠페인 진행
- ◆ 지원사항
 - ① 활동비 지급(국내 활동 중/ 총 105만원(세전)/ 해외 활동 전·후 분할 지급))
 - ② 생활비 지급(해외 활동 중/ 국별 평균 \$655(4회 × 월별)/ 주거비 별도 지원)
 - ※ 단, 생활비의 경우 파견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예정
 - ③ 해외 활동의 제반경비(항공료, 비자발급비, 보험료, 의료보안지원 서비스, 예방접종비, 안전/활동 물품 등) 일체 지원
 - ④ KOICA 개발협력 커리어 센터와 연계된 취업 지원 서비스 이용 가능
 - ⑤ 지구촌나눔운동 NGO봉사단(해외파견간사) 및 YP 지원 시 우선 선발
 - ⑥ 단원 활동 증명서 발급

- 모집인원: 60명(캄보디아/동티모르/피지/르완다 각 15명)
- 활동기간: 2024년 8월 중순 - 2024년 12월 (국내활동 1개월/해외활동 4개월)
※ 교육기간은 활동 기간에 포함되지 않음.
- 활동국가(분야): 캄보디아(초등교육 지원), 동티모르(초등교육 지원),
피지(초중등교육지원), 르완다 (유아교육 & 평화 지원)

○ 지원자격:

(공통자격)

- 1) 봉사정신이 투철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남녀
- 2) 남성은 군복무를 필했거나 면제된 자
- 3) 우리 정부와 파견국 출입국 관리기준 및 해외감염병 예방수칙 등에 부합하는 자
- 4) 해외봉사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 가능한 자
- 5) 국가 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

(우대사항)

- 1) 사회배려층 대상자
- 2) 비수도권 지방인재
- 3) 고졸자, 특성화고/마이스터고 졸업자
- 4) 활동국 현지 활동 경험자 및 뛰어난 의사소통 능력자
- 5) 디지털 활용 능력자 및 ODA 자격증 소지자
- 6) 일부 직종 경력 및 전공자: 활동국 현지 활동 경험, 디지털 활용 능력자
- 7) 르완다 파견자의 경우 대졸자, 아프리카 지역학, 제노사이드, Peace Building 활동 관심자

○ 선발기준:

- 1) 국제개발협력 분야 장기 비전을 통한 개발협력 활동가로서의 성장 가능성
- 2) 지원서 작성 내용의 성실도, 진정성 및 참신성
- 3) 4개국 지역사회와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이해도
- 4) 참여 동기 및 적극성, 창의성 등 품성
- 5) 팀제 활동에 필요한 특기, 기술, 장점
- 6) 활동국 현지 활동 경험, 디지털 활용 능력자

○ 심사 가산점 부여 기준:

※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특례에 따라, 90일 이상 해외체류 시에도 수급 자격이 유지됩니다.

정부해외인턴사업 등 참가자가 있는 가구에 대한 수급자 선정기준 특례 대상에 'KOICA 해외봉사단 참가자 추가' 적용 (시행일 2023. 10. 6.~)

<가산점 부여 기준>

□ 근거 : 해외봉사단파견 규정 시행세칙

구 분		가산점		비고(증빙자료)
		서류	면접	
사회 배려층	저소득층(국민기초생활수급자)	5	5	기초생활수급자확인서
	장애인	5	5	장애인증명서
	차상위계층	5	5	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
	한부모가족	5	5	한부모가족증명서
	다문화가족	5	5	국적취득증명서
	6개월이상 장기실직자	5	5	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
	여성가장	5	5	가족관계증명서
	보훈보상대상자	5	5	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
	국가유공자(자녀)	5	5	국가유공자(자녀)증명서
	자립준비청년	5	5	재원증명서 및 보호종료확인서
기타	고졸자, 특성화고/마이스터고 졸업자, 비수도권 지역인재	3	-	최종학력증명서

○ 지원절차: 지구촌나눔운동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지원서 양식 작성 후 이메일 접수 (gcsv@gcs.or.kr) : 지원서 양식 추후 공지

○ 전형절차

지원서 접수	1차전형 (서류전형)	2차 전형 (면접, 적합도 검사 전형)	3차 전형 (신체검사)	최종전형
- 온라인 접수		- 적합도 검사 - 면접 전형	- 신체 검사 - 증빙 제출	- 최종심사 및 국가배정
24.5.27(월) ~24.6.12(수) 23:59(KST)	2차 전형 대상자 발표 24.6.20(목)	24.6.25(화) (1차 통과자 대상 개별 통보)	24.6.26(수) ~24.6.29(토) (2차 통과자 대상 개별 통보)	대상자 발표 24.7.5(금)

※ 상기 일정은 지구촌나눔운동 및 협력국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별도 공지합니다.

[ZOOM 온라인 설명회 참가 신청]

- 일시: 2024.5.31(금), 15:00~16:00(KST) (참가접수마감 2024.5.30(목) 23:59까지)
- 참가신청 링크: 본 공고 시 게시 예정
- *참가신청자에게 설명회 링크 개별 송부(이메일)합니다.

○ 교육일정: 2024년 7월 중 (교육 필수 참석)

○ 지원내용: 활동시 지원

1) 국내활동비 및 해외활동 생활비 지급 (봉사단원 지침 준수기준)

□ 활동비(국내 활동 중/ 총 105만원(세전/ 해외 활동 전·후 분할 지급)

□ 생활비(해외 활동 중/ 주거비 별도 지원)

- 캄보디아: 월 \$590 (4회*월별)
- 동티모르: 월 \$700 (4회*월별)
- 피지: 월 \$630 (4회*월별)
- 르완다: 월 \$700 (4회*월별)

※ 단, 생활비의 경우 파견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예정

2) 해외활동의 제반경비(항공료, 비자발급비, 보험료, 의료보안지원서비스, 예방접종비, 안전/활동 물품 등) 일체 지원

3) KOICA 개발협력 커리어 센터와 연계 취업 지원 서비스 이용 가능

4) 지구촌나눔운동 NGO봉사단(해외파견간사) 및 YP 지원 시 우선선발

5) 단원 활동 증명서 발급

○봉사단 지원 관련 문의

대표메일: gcsv@gcs.or.kr

전 화: 02-6272-7678

상담시간: 평일 10시 ~ 16시(점심시간 12시 ~ 13시 제외), 공휴일 휴무

담당자: 김수진 AM

[붙임 1] 비수도권 지역인재 안내

※ 기재부「공공기관 통합공시 매뉴얼」의 '비수도권 지역인재 및 이전지역 인재 범위'를 준용

1. 비수도권 지역인재 범위

- 가. 대학까지의 최종학력(대학원 이상 제외) 기준으로 서울·경기·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대학 졸업자(졸업예정자 포함) 또는 재학·휴학 중인 자
- 나. 2개 이상의 대학 졸업의 경우 지원자가 제출한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판단

2. 비수도권 지방대학의 범위

- 가. 「고등교육법」제2조의 각 호에 따른 학교로서 본교가 서울·경기·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'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, 원격대학(사이버대학은 제외)기술대학, 각종학교'
- 나. 「고등교육법」제24조 상의 '분교'로서 서울·경기·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

<예시>

- ▶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: 지방대학에 해당
 -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는 고등교육법 제24조 상의 분교
- ▶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 : 지방대학에 해당하지 않음
 -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는 고등교육법 제24조상의 분교가 아님
- ※ 대학알리미(www.academyinfo.go.kr)에서 본·분교 여부 조회 가능

- 다.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서울·경기·인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지역대학
- 라.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 제3항에 의해 설치된 과학기술대학

3. 지방대학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(예시)

- 가. 본교가 서울·경기·인천에 소재하는 대학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·경기·인천 지역대학
- 나.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
- 다. 사이버대학, 디지털 대학 등 「평생교육법」상의 평생교육시설
- 라. 외국대학 및 외국대학의 국내분교

4. 그 외의 지방인재에 해당하는 경우

- 가. 최종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에는 최종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경우
- 나.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중퇴자로서 경찰대학·사관학교를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
- 다. 대학원 및 사이버·디지털 대학 등의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또는 독학사, 학점인정에 의한 학위 취득자,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당해 학력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

5. 지방대학 졸업여부 검증

- 가. 졸업증명서를 제출토록 하여 지방대학교 졸업자임을 검증하되,
- 나. 분교인 경우 졸업증명서에 본교와 분교의 구분이 없는 관계로 분교 졸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(학교장확인서 등)를 제출받아 검증

[붙임 2] 사회적배려층 준용 관련법 및 제출서류 안내

※ 해당자는 지원서 제출기간 내 (5.27(월) ~ 6.12(금), 23:59) 지원서 작성 시 업로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특례에 따라, 90일 이상 해외체류 시에도 수급 자격이 유지됩니다.

정부해외인턴사업 등 참가자가 있는 가구에 대한 수급자 선정기준 특례 대상에 'KOICA 해외봉사단 참가자 추가'
적용 (시행일 2023. 10. 6.~)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해당하는 자

관 련 법	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“수급권자” 2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“차상위계층”
제 출 서 류	1. 수급권자 -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서 1부(행정복지센터 발급) 2. 차상위계층 -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(국민건강보험공단), 자활근로자확인서(행정복지센터), 장애수당대상자확인서(행정복지센터) 중 1부

2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해당하는 자

관 련 법	제2조(장애인의 정의 등) ① “장애인”이란 신체적·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 는 자를 말한다.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 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 1. “신체적 장애”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,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. 2. “정신적 장애”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.
제 출 서 류	1. 장애인증명서 1부(행정복지센터 발급)

3. 「한부모가족 지원법」에 해당하는 자

관 련 법	제4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"모" 또는 "부"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 다. 가.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(遺棄)된 자 나.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. 미혼자{사실혼(事實婚)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} 라.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2. "한부모가족"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. 3. "모자가족"이란 모가 세대주{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(世代員)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}인 가족을 말한다. 4. "부자가족"이란 부가 세대주{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} 인 가족을 말한다. 5. "아동"이란 18세 미만(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)의 자를 말한다.
제 출 서 류	1. 한부모 가족 증명서 1부 2. 가족관계증명서 1부

4. “다문화가족지원법”에 해당하는 자

관 련 법	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"다문화가족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. 가.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「국적법」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. 「국적법」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. "결혼이민자등"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 가.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. 「국적법」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3. "아동·청소년"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
제 출 서 류	1. 국적취득증명서 1부 (국적 취득시) 2.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1부 (부 또는 모, 해당자에 한함) 3. 가족관계증명서 1부

5. 고용노동부 「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」에 따른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

관 련 법	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조 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"장기실업자"란 고용보험 피보험자이었던 자로서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후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를 말한다.
제 출 서 류	1. 구직등록확인서 2.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서

6.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“취업취약계층” 중 여성가장에 해당하는 자

구 분	첨 부 서 류	
배우자 無	- 가족관계등록부 - 부모가 근로능력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(해당자에 한)	
배우자 有	가출·행방불명	실종신고서
	장애	장애인등록증, 국가유공자증명서, 장애급여지급통지서 중 1부
	질병	의사의 진단서
	군복무	복무확인서
	학교 재학	재학증명서
	교도소 입소	수용증명서, 형확정판결문
	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 업상태에 있는 배우자	직업안정기관(고용센터)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
	이혼소송 제기	이혼소송확인서
	기타 가족 생계 부양	통·반장의 확인서(검토)

7. “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”에 해당하는 자

관련법	제33조(취업지원 대상자 등)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(이하 "취업지원 대상자"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2.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3.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배우자 ② 취업지원 대상자는 제37조 및 제41조에 따른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제37조제2항에 따라 채용되는 횟수와 제41조에 따라 고용되는 횟수를 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내에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.
제출서류	1.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

8. 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”에 해당하는 자

관련법	제29조(취업지원 대상자 등)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(이하 "취업지원 대상자"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재일학도의용군인, 4·19혁명부상자, 4·19혁명공로자, 공상공무원,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2. 전몰군경, 순직군경, 4·19혁명사망자,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3.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4. 전몰군경, 순직군경, 4·19혁명사망자,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5.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·19혁명부상자,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②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실시할 경우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명에게만 실시한다. ③ 취업지원 대상자는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제32조제2항에 따라 채용되는 횟수와 제34조에 따라 고용되는 횟수를 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내에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.
제출서류	1. 국가유공자(자녀) 증명서

9. “아동복지법”에 해당하는 자

관련법	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5. "아동복지시설"이라 함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. 제14조(아동복지시설의 설치)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는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 ③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제출서류	1. 위탁 가정 및 아동보육시설 재원증명서 또는 보호종료확인서 중 1부 2. 주민등록등본 1부